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1622호

2023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종 및 단가 공고

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제1항제3호 및 「예정가격 작성기준(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)」 제38조제4항, 「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(국토교통부 훈령 제1564호)」 제88조제4항에 따라 "2023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"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. 12. 30.

국토교통부장관

1. 제정목적

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

2. 적용일시 : 2023년 1월 1일부터

3. 적용범위

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·준정부기관,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

4. 구성내용

제1장 총칙

제2장 토목공사 표준시장단가

제3장 건축공사 표준시장단가

제4장 기계설비공사 표준시장단가

제5장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

5. 관리기관 :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(☎031-995-0900)

6. 기 타

2023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집은 우리부
(<http://www.molit.go.kr>, 뉴스·소식/공지사항)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
공사비원가관리센터(<https://cost.kict.re.kr>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